

光州直轄市西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制定條例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2年 5月
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2年 3月 19日

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2年 5月 11日

라. 上程日字 : 第15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 (臨時會)

第1次 總務委員會 (92. 5. 15.) 上程

提案說明, 檢討報告, 質疑答辯.

第2次 總務委員 (92. 5. 16.) 議決

2. 提案說明的 要旨

(提案說明者 : 西區 總務局 企劃監查室長)

가. 提案理由

-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 (법률 제4466호

'91. 12. 31)으로

-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체계 정착및 투자사업의 타당성. 효율성을 제고코자함.

나. 主要 骨 子

- 1) 구성 : 위원은 10인이상 15인이내(구의회의원. 관계국과장급공무원. 전문분야 교수. 지역대표등)
- 2) 기능 :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시 지방재정운영 방향. 자원조달. 투자사업.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.
- 3)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정기회의를 개최 (필요시 임시회의 소집)하며
위원의 임기는 2년 (연임가능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李元昌)

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6조 2 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를 근거법규로 한 재정조례로

-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
두개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임으로 재정시행케 하여
-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심의에 당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	答 辯
<p>○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성위원중 구의원 수를 3-4인으로 확대 조정할수 없는지?</p> <p>○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과 명칭을 지명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은 ?</p>	<p>(答辯者: 企劃監査室長 李占守)</p> <p>○ 구성위원의 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증감할수 있음</p> <p>○ 실과 명칭을 지정하면 직제 개편이 있을시 수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므로 신축성있게 하기 위해 실과 명칭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함.</p>

5. 討論要旨

6. 審査結果 : 별첨 조례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

7. 少數意見의要旨 :

8. 其他射程 :